

특별 소비세 부과에 따른 가전업계 애로 및 문제점 건의 (안)

일자 : 1994년 6월 22일자

대상 : 관련부처

1. 건의내용

우리 가전업계는 국민 교육·문화 수준 및 가사노동 절감에 의한 사회진출 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 우리 국민경제 및 전체 제조업을 선도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전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하게 된 것이다.

첫째, 보급률이 90% 이상인 생필품화 된 제품 또는 지속적인 시장증가 및 산업선도 제품에 대해서는 10%로 일괄 적용해 주어야 한다.

가전업계 건의 내용

(단위 : %)

구 분	보급률	현 행		건의세율		소비자 물가 인하율
		기본세율	물가	기본세율	물가	
세탁기	91	10	24.3		24.3	
냉장고	300 l 이하	108	15	31.45	"	↓ 7.15
	300 l 초과		20	38.6	"	↓ 14.3
컬라 TV	20" 이하	135	15	31.45	"	↓ 7.15
	20" 초과		20	38.6	"	↓ 14.3
V T R	71	20	38.6	일괄 적용	"	↓ 14.3
청 소 기	47	15	31.45		"	↓ 7.15
전 자 렌 지	45	15	31.45		"	↓ 17.15
에 어 콘	9	25	45.75		"	↓ 21.45
TV영상투사기	-	30	52.9		"	↓ 28.6

자료 : 가전기기 보급률 조사연구 1994(한국전력공사)

둘째, 세수 확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서 외산 불법제품(밀수)의 범람으로 국내 유통 구조의 혼란을 초래하는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폐지 해야 한다.

2. 특별 소비세 부과에 따른 가전업계 애로 및 문제점

가전제품에 대한 조세연구원의 특소세 개편(안)은 300 l 초과 냉장고 등 일부 품목은 현행 세율보다 5%를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탁기는 5%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개선폭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가전제품을 중심세율(15%) 이상의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한 범취지상으로도 가전제품을 전형적인 사치성 소비제품으로 보고 있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로 인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첫째, 가전제품은 그 기능상 국민·문화 생활 용품이며, 그 보급률을 볼때도 생활의 필수품화된 제품으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코자 하는 특별 소비세 취지와 맞지 않아 중심세율(15%) 이상의 대상품목이 아니라고 본다.

둘째, 우리 가전제품의 세율(10%~30%)은 타 산업 제품(자동차 : 10%~25%, 귀금속 : 20%~60%, 고급가구 : 10%)들과 비교해 볼때, 그 보급률이나 기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셋째, UR 타결에 따라 세계적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가전제품의 간접세율(24.3%

~52.9%)은 경쟁국(0%~10%)이나 선진국(3%~9%)들의 세율과 비교해 볼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넷째, 수출 1위 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해 가고 있는 우리 전자산업은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심화, 보급률 포화, 임금 상승, 환경보호에 대한 세계적 규제강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간접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능력을 제고 시켜야 한다.

밖으로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절실하며 안으로는, HDTV, 디지털화, 멀티미디어화 등의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증가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다.

다섯째, 특소세 등 고율의 간접세 체제로 인하여 불법 도입된 외국 제품과 국산 제품간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 불법 도입된 제품의 판매업체 근절 곤란은 물론이고 국내 유통산업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여섯째, 가전 제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로 인한 세수 확보 측면의 효과와, 특소세 인하로 인한 가전산업 활성화(보급 촉진을 통해 국민 특히, 미보급 계층인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층의 문화생활 향상, 가사노동 경감을 통한 여권신장·여성인력의 활용, 가전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증대 등) 측면의 효과를 치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곱째, 기본적으로 세제 개선 방향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토록한 간접세의 비중을 점차 인하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전제품의 특별 소비세는 현재보다 대폭 인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요 경쟁국의 간접세 현황

가. 각국의 간접세 현황

일본 3%, 미국은 주에 따라 4~9%, 대만은 무세 등으로 우리나라의 제세율(24.3~52.9%)보다 현격히 낮다.

각국의 간접세 현황

(단위: %)

구 분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제세율
한 국	10~30	특소세×0.3	10	24.3~52.9
일 본	3			3
미 국	주별 4~9			주별 4~9
대 만	무 세			무 세
말레이시아	10			10

나. 간접세 측면에서의 각국과의 가격 비교

각국의 물품대를 100으로 보았을때, 경쟁국인 대만과는 최대 52.9%, 일본과는 49.9%, 미국과는 48.9%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접세 측면에서의 각국과의 가격 비교

구 분	물품대	간접세	소비자가격
한 국	100	24.3~52.9	124.3~152.9
일 본	100	3	103
미 국	100	4~9	104~109
대 만	100	-	100
말레이시아	100	10	110

4. 참고 자료

가. 현행 세율

보급률이 100% 이상이 되는 칼라TV, 냉장고가 각각 15~2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에어컨과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등은 무려 25%, 30%의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특소세 부과제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기본세율의 30%의 교육세로 납부해졌고 있어 있고 아울러, 부가세는 동세율의 합계에 대한 10%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20%인 경우는 18.6%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나. 조세연구원의 세제개편(안)

조세연구원의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세율 구조를 낮은세율(10%), 중세세율(15%), 높은세율(25%) 등 3가지로 재조정하고 있다.

비디오 CDP 등 첨단 CD관련 제품, 특별 소비세법상 잠정세율 적용의 문제점 및 애로건의

일자 : 1994년 6월 18일자

대상 : 상공자원부, 재무부

1. 건의 내용

가. 건의(안)

현 행	개 선 (안)
<p><특별소비세법> 제2조의 3 [잠정세율적용물품] 법 제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다음과 같다. <신설 '81. 21. 31. 개정 '82. 12. 31. '84. 5. 1. '84. 12. 31> 1. ~3. 삭제< 88. 12. 31> 4. 삭제< 93. 12. 31> 5. 삭제< 93. 12. 31> 6. 별표 1 제2종 제5호 물품 중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및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신설 '91. 6. 28> 7. 별표 1 제2종 제11호 물품 중 캠코더 및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신설 91. 6. 28> 8. -신 설-</p>	<p>제2조의 3 [잠정세율적용물품] -좌 동- 1.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좌 동- 7. -좌 동- 8. 별표 1 제2종 제5호 물품 중 비디오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및 대화형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p>

나. 첨단 멀티미디어 제품(비디오CDP, CD-I 등)의 잠정세율 적용 물품상에 추가지정 요망
현행 특별 소비세법 잠정세율 적용물품 지정이 '91년 6월 28일에 지정되어 있어 첨단 멀티

미디어 제품(Video Compact Disc Player, Compact Disc Interactive Player, 3DO Player, CD-ROM계 Player, Interactive Recorder 복합제품 등)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멀티미디어 발전 가능성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시장형성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특별 소비세법 잠정세율 적용 물품상에 추가로 지정 명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잠정세율 적용시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와 동일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타당성

비디오CDP, CD-I Player 등은 원판의 형태(직경 12cm)와 기록·재생을 디지털 압축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와 동일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단지, 첨단기술의 발달로 CDP(음향에 한함)와 동일한 소재 내에 진보된 압축·복원 기술을 응용하여 영상을 추가한 제품이다.

따라서 특별 소비세법 제1조의 2 잠정세율 적용취지를 살려, 비디오CDP, CD-I Player의 국내 시장이 확대 유도 및 수출 전략산업으로의 육성차원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잠정세율적용물품) 8호로 신규 지정이 요망된다.

라.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로 동일 적용의 불합리성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의 경우 원판과 기록·재생방식이 비디오CDP와 전혀 상이한 방

식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외형적으로나 세부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비디오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와 대화형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는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로 분류할 수 없고, 가전3사 및 현대전자가 금년도에 들어서 출시하고 있는 제품임으로 수출 전략 및 내수 확대상(금성사: 일, AIWA사와 OEM수출 계약체결) 절대적으로 잠정세율 적용 물품에 신규 지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비디오CDP 등 CD관련 제품에 대한 잠정세율 적용 현황 및 문제점

가. 비디오CDP 잠정세율적용 현황

○현행 근거

-특별소비세법 제1조 2항의 제2종

5. 전기음향기기(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 음성녹음·재생의 것을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11.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특별소비세법 제2조의 2 (잠정세율)

① 법 제1조 제2항 제2종에 규정한 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 전략상 필요한 물품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잠정세율적용물품)

6. 별표 1 제2종 제5호 물품중 콤팩트 디스크플레이어 및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 <신설 '91. 6. 28>

7. 별표 1 제2종 제11호 물품중 캠코더 및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신설 '91. 6. 28>

나. 현행 적용상의 문제점

○비디오CDP 등 첨단 멀티미디어 제품에 대한 잠정세율 적용 근거 미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잠정세율

적용물품) 6호와 7호 내용상에는 음향 또는 영상 등 단일 매체로 적용하고 있어

-비디오CDP, CD-I 등 첨단 멀티미디어는 사실상 적용 근거가 없음

○비디오CDP를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와 동등 적용상 문제점

-원판의 상이

• 비디오CDP, CD-I: 콤팩트 디스크와 동일한 직경이 12cm인 원판을 사용

• LDP: 직경이 30cm인 레이저디스크를 사용

-기록 및 재생 방식이 상이

• 비디오CDP, CD-I: 콤팩트 디스크와 동일한 디지털 압축방식

• LDP: 아날로그 비압축방식

3. CD관련 산업 활성화 필요성

CD관련 산업은 비디오 CDP, CD-I 플레이어, 3DO 플레이어, CD-ROM계 플레이어, I-Recorder 복합제품 등 가전·정보기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멀티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써 가전·정보산업 전부문에 방대한 신규 시장 창출을 유도할 '90년대 최대의 유망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급 포화단계에 진입한 가전산업의 대체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특히 구조적 채산성 악화에 처한 컴퓨터 산업의 발전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며 음성과 영상의 종합정보통신을 추구할 수 있는 신종매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디오CD Player의 경우 차세대 AV기기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핵심기술 및 제작기술도 선진국과 동등한 위치를 선점한 상태이고, 금성사의 경우 일본의 AIWA사와 1차로 1,000대 수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비디오 CDP 등 CD관련산업에 대한 발전 육성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사료 되는 바, 멀티미디어 추세에

따라 가전·정보기기의 범위 설정은 무의미해져가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가전·정보산업을 적절히 융합 시킬 수 있는 매체로써 CD관련 제품을 들수 있으며, 동산업에 대한 활성화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우리 가전·정보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비디오CDP를 음성+영상의 복합매체라하여 원판이 다르고 기록·재생방식(아날로그)이 다른 LDP로 분류하는 모순이 있어서도 아니되며, 비디오CDP는 별도 단일품목으로 지정하여야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기존제품에 적용시에는 원판과 기록·재생방식(디지털)이 동일한 CDP와 동일시 분류하여 재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특별 소비세법 제1조의 2항 제2종에 규정한 잠정세율 적용 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

하는 물품으로써 수출 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가전·정보기기에 대하여는 잠정세율적용 물품상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않은 상태이다.

급속한 기술혁신과 국내 CD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산업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 H/W 산업은 제품기획·원천설계 기술력 부족에 의한 제품개발의 한계, 타이틀 부재로 인한 판촉의 한계가 있으며 국내 타이틀 산업은 S/W의 유치단계에 와 있으며 멀티미디어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재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멀티미디어산업은 발전의 가능성은 확실히 인정되고 있는 바, 국가에서는 동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및 완화, 국가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발전을 유도해야 할 적절한 시기로 판단된다.

시사용어 ①

PCMCIA

PCMCIA(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 「개인용컴퓨터 메모리카드 국제협회」라는 국제협력기구에서 제정한 메모리카드 규격으로 소형 컴퓨터 등에 장착되는 대용량 저장매체나 확장기기의 국제 표준을 내용으로 한다.

PCMCIA 규격에 따라 컴퓨터 본체에 만들어진진 소켓을 PCMCIA 슬롯이라 부르고 이 슬롯에 장착할 수 있게 저장매체와 각종 주변장치를 신용카드 크기만 하게 축소한 장치를 PCMCIA카드라 한다. PCMCIA카드의 장착은 플로피 디스크를 장착하듯

이 손쉽다.

PCMCIA는 두께와 사양에 따라 타입 I, II, III로 나뉜다.

타입 I은 3.3mm 두께로 저장매체용인 메모리카드이고 5mm 두께의 타입 II와 10.5mm 두께의 타입 III는 각각 입출력 카드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카드다.

국제협회의는 올해안에 새로운 규격인 타입 IV를 제정할 계획인데 이 규격은 18mm 두께의 고용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카드의 국제표준이다.